

◎ 상공자원부령 제1호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 규칙 중 개정령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중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993년 3월 11일

상공자원부장관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조(특허법) 특허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는 다음과 같다.

특허권 존속기간의 기산일부터의 연수	금 액
제1년 내지 제3년	매년 20,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2,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4년 내지 제6년	매년 34,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7,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7년 내지 제9년	매년 68,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22,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10년 내지 제12년	매년 136,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28,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13년 내지 제15년	매년 272,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33,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16년 내지 제20년	매년 544,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39,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실용신안등록료) 실용신안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료는 다음과 같다.

특허청 게시판

실용신안권존속기간의 기산일부터의 연수	금 액
제1년 내지 제3년	매년 14,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4,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4년 내지 제6년	매년 25,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7,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7년 내지 제9년	매년 50,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0,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10년	매년 100,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3,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 (의장 및 유사의장등록료) 의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 및 유사의장등록료는 다음과 같다.

의장권 또는 유사의장권존속 기간의 기산일로부터의 연수	금 액
제1년 내지 제3년	매년 17,000원
제4년 내지 제6년	매년 23,000원
제7년 내지 제8년	매년 46,000원

제 4 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 매건 153,000원
2. 연합상표·연합서비스표·연합단체표장 또는 연합업무표장 매건 153,000원
3. 지정상품추가·지정서비스추가 또는 지정업무 추가 매건 153,000원

제 5 조 제5호중 “매건 180,000원”을 매건 “190,000원”으로 한다.

제 6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원료

- 가.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매건 18,000원
다만, 특허출원(연장등록출원을 제외한다)서류중 명세서 및 도면이 20면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면마다 600원씩을 가산한다.
- 나. 실용신안등록출원 매건 12,000원
다만, 출원서류중 명세서 및 도면이 20면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면마다 500원씩을 가산한다.
- 다. 의장등록출원 또는 유사의장등록출원 매건 45,000원
- 라.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의 등록출원 매건 46,000원
다만, 지정상품·지정서비스 또는 지정업무가 각각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상품·서비스 또는 업무마다 5,000원씩을 가산한다.
- 마. 연합상표·연합서비스표·연합단체표장 또는 연합업무표장의 등록출원 매건 46,000원
다만, 지정상품·지정서비스 또는 지정서비스 또는 지정업무가 각각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상품·서비스 또는 업무마다 5,000원씩을 가산한다.
- 바. 상표권·서비스표권·단체표장권·업무표장권·연합상표권·연합서비스표권·연합단체표장

특허청 게시판

권 또는 연합업무표장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매건 87,000원
다만, 지정상품·지정서비스 또는 지정업무가 각각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대상품·서비스 또는 업무마다 5,000원씩을 가산한다.

사. 지정상품·지정서비스 또는 지정업무의 추가등록출원 매건 46,000원
다만, 지정상품·지정서비스 또는 지정업무가 각각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대상품·서비스 또는 업무마다 5,000원씩을 가산한다.

제 6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심사청구료

특허출원 매건 67,000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매건 32,000원
다만, 심사청구당시의 청구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5,000원(실용신안등록 출원의 경우에는 8,000원)씩을 가산한다.

제 6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 6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심판청구료. 다만,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항이 3항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6,000원씩을 가산한다.

가. 권리범위확인심판 매건 100,000원
나. 무효심판 매건 100,000원
다. 취소심판 매건 100,000원
라. 재심청구 매건 100,000원
마. 통상실시권허여심판 매건 100,000원
바. 정정허가심판 매건 100,000원
사. 분할허가의 무효심판 매건 100,000원
아. 정정허가의 무효심판 매건 100,000원
자. 분할허가의 무효심판 매건 100,000원
차. 취소처분신청 또는 통상실시권허여처분신청 매건 100,000원
카. 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 매건 100,000원

7. 항고심판청구료. 다만, 특허권·특허출원·실용신안권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청구범위
의 항이 3항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1,000원씩을 가산한다.

가. 권리범위확인심판 매건 150,000원
나. 무효심판 매건 150,000원
다. 취소심판 매건 150,000원
라. 출원의 거절사정 및 보정각하의 불복심판 매건 100,000원
마. 재심청구 매건 150,000원
바. 통상실시권허여심판 매건 150,000원
사. 정정허가심판 매건 150,000원
아. 분할허가심판 매건 150,000원
자. 정정허가의 무효심판 매건 150,000원
차. 분할허가의 무효심판 매건 150,000원
카. 즉시항고 매건 150,000원
타. 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 매건 150,000원

특허청 게시판

제 6 조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법정기간·지정기간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1회	매건 15,000원
2회	매건 25,000원
3회	매건 40,000원
4회	매건 50,000원
5회이상	매건 60,000원

제 7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11항중 “출원료·심사청구료·출원공고료 또는 의장등록공고료와”를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와”로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이미 납부된 특허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납부된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는 이 규칙에 의하여 납부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특허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특허(등록)사정 또는 특허(등록) 심결의 등본이 발송된 출원에 대한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의장등록료 또는 유사의장 등록료는 제1조 내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4 조(상표등록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등록사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이 발송된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연합상표·연합서비스표·연합단체표장 또는 연합업무표장의 등록료, 지정상품·지정서비스 또는 지정업무의 추가등록료, 상표권, 서비스표권·단체표장권·업무표장권·연합상표권·연합서비스표권·연합단체표장권 또는 연합업무표장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제4조 및 제5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5 조(심사청구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심사청구된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료는 제6조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개정이유

외국의 수수료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율을 상향조정하고 불합리한 수수료 항목을 폐지하는 등 현행 규정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수수료체계를 개선하고 특허관리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독립채산제의 정착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외국의 수수료수준 등을 고려하여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를 상향조정하고, 종전에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출원시 명세서에 기재하는 보호받고자 하는 청구범위의 항이 5항을 초과하는 경우 특허료 또는 실용신안등록료에 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3항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함(제1조 내지 제4조, 제5조 제5호, 제6조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
- 나. 출원공고와 의장등록공고는 발명장려 등을 위하여 국가가 행하는 절차이므로 그 비용을 출원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출원공고료 및 의장등록공고료를 폐지함(제6조 제4호 및 제5호).
- 다. 빈번한 기간연장 또는 기일변경으로 인한 심사 및 심판처리의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정기간·지정기간 또는 기일변경신청료를 상향조정함(제6조 제17호).

〈상공자원부 제공〉